

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 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(안)

제안이유

- 과세면제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하므로써 본 조례 실효성 상실

주요골자

- 철도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 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분할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

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. 전문위원은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전문위원 민귀식

(참 조)